

하남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

의안 번호	3144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년 8월 일

발의자 : 강성삼 의원

1. 제안이유

재향경우회는 「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」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서 민 봉사, 치안 활동, 공익 증진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. 이에, 안정적 운영과 지속적 활동을 위해,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요 사업 경비를 지원하고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시정 발전과 시민 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규정(안 제1조~안 제2조)
- 나. 보조금 지원 근거 및 중복 지원 제한에 관한 규정(안 제3조)
- 다. 지원 대상 사업에 관한 규정(안 제4조)
- 라. 지원 신청 및 정산 보고에 관한 규정(안 제5조)
- 마. 포상에 관한 규정(안 제7조)

3. 제정조례안 : 덧붙임

4. 관계법령 발췌서 : 덧붙임

5. 신·구조문 대비표 : 해당없음

하남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」 제15조제3항에 따라 하남시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에 대한 봉사 와 치안 협력 및 공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재향경우회”란 하남시에 소재지를 두고 「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」 제5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재향경우 회의 지역회(이하 “경우회”라 한다)를 말한다.

제3조(보조금의 지원) ① 하남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경우회가 시정발전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지원 경비는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.

③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.

제4조(지원사업) 시장이 제3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
2.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
3. 아동·청소년 등의 폭력예방 등 시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
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5조(지원신청 및 정산보고)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
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와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
제출하여야 한다.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.

② 경우회는 지원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
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경우회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요구할
수 있다.

제6조(준용)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
「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7조(포상) 시장은 경우회 육성을 위하여 경우회와 관련된 기념일에
국가 또는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경우회 소속 회원에게 「하남시 포
상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 발췌서

1 「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」

[시행 2020. 7. 1.] [법률 제17167호, 2020. 3. 31., 일부개정]

- 제5조(조직)** ① 경우회에는 중앙회, 시·도회를 두고 지역회를 둘 수 있다.
- ② 경우회의 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, 시·도회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 및 도청(특별자치도청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소재지에, 지역회는 경찰서 소재지에 둔다. <개정 2011. 5. 30.>
- ③ 경우회에 제1항에 따른 중앙회, 시·도회 및 지역회와 별도로 특정한 회원들로 구성되는 특별회를 둘 수 있다. <신설 2011. 5. 30.>
- ④ 경우회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·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. <개정 2011. 5. 30., 2020. 3. 31.>

[전문개정 2010. 7. 23.]

- 제15조(재정)** ① 경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, 사업 수입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 <개정 2011. 5. 30.>
- ② 국가는 경우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3. 31.>
- ③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 <신설 2020. 3. 31.>

[전문개정 2010. 7. 23.]

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·개정 현황

번호	자치단체	법규명	제·개정일	소관부서
1	경기도	경기도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	2022-01-06	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
2	경기도 과천시	과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	2023-11-24	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
3	경기도 파주시	파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	2022-04-29	행정안전국 자치협력과
4	경기도 여주시	여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	2022-04-20	총무안전국 총무과
5	경기도 시흥시	시흥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	2024-02-08	행정국 주민자치과
6	경기도 광명시	광명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	2021-12-23	기획조정실 자치분권과
7	경기도 양주시	양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	2021-11-22	기획조정실 총무과
8	경기도 안양시	안양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	2021-09-29	안전행정국 자치행정과
9	경기도 수원시	수원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	2021-03-19	기획조정실 자치분권과
10	경기도 구리시	구리시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	2021-03-12	홍보협력담당관
11	경기도 부천시	부천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	2021-02-08	행정안전국 자치분권과
12	경기도 광주시	광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	2021-01-04	행정자치국 행정지원과
13	경기도 동두천시	동두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	2021-01-01	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
14	경기도 안산시	안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	2020-12-30	행정안전교육국 자치행정과
15	경기도 연천군	연천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	2020-12-24	부군수 행정담당관
16	경기도 포천시	포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	2020-12-23	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
17	경기도 가평군	가평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	2020-12-23	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
18	경기도 양평군	양평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	2020-11-16	총무담당관
19	경기도 오산시	오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	2020-11-06	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

20	경기도 남양주시	남양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	2020-10-29	기획조정실 행정지원과
21	경기도 성남시	성남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	2020-08-24	행정기획조정실 자치행정과
22	서울특별시 종로구	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	2025-04-11	행정국 행정지원과
23	서울특별시 은평구	서울특별시 은평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	2024-11-07	행정국 자치행정과
24	서울특별시 강서구	서울특별시 강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	2023-03-29	행정문화국 자치행정과
25	서울특별시 노원구	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	2022-04-28	문화도시행정국 자치행정과
26	서울특별시 용산구	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	2021-11-12	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
27	서울특별시 동대문구	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	2021-11-11	행정국 자치행정과
28	서울특별시 마포구	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	2021-09-30	행정지원국 구민안전과
29	서울특별시 광진구	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	2021-09-13	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
30	서울특별시 강동구	서울특별시 강동구 재향경우회 예우 및 지원 조례	2021-08-04	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
31	서울특별시 중구	서울특별시 중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	2021-04-02	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
32	서울특별시 영등포구	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	2021-03-18	행정국 자치행정과
33	서울특별시 동작구	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	2021-03-11	행정자치국 행정자치과
34	서울특별시 관악구	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	2021-02-18	행정혁신국 자치행정과
35	서울특별시 서초구	서울특별시 서초구 재향경우회 예우 및 지원 조례	2021-01-13	문화행정국 행정지원과
36	서울특별시 중랑구	서울특별시 중랑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	2021-01-07	행정국 마을협치과
37	서울특별시 금천구	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	2020-12-31	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
38	서울특별시 강북구	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	2020-11-13	행정안전국 행정지원과
39	서울특별시 구로구	서울특별시 구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	2020-11-10	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
40	서울특별시 성북구	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	2020-11-05	행정문화국 자치행정과